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8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조승래・이정문・김회재

박홍근 • 서영석 • 조정식

서영교 · 김병기 · 도종환

김민기 · 신동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, 관계법령이 제정·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으로 천재지변 등 불 가피한 경우,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정·개정·폐지로 인한"을 "제정·개정·폐지 및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	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
공표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	중표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	
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	
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	
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계	
법령의 <u>제정·개정·폐지로 인한</u>	<u>제정·개정·폐지 및 천재</u>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
	<u>유가 있는</u>
	<u>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